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 : 2022. 7. 5.

위원정수 : 7명

재직위원 : 7명

1. 일 시 : 2022. 7. 14.(목) 15:00~16:00	
2. 장 소 : 본 대학 205호 회의실	
3. 참석위원 : 손화희(위원장, 교원), 서광적(교원), 강명수(직원), 권아림(동아리연합회 회장), 이동철(회계사) 이상 5명	
4. 불참위원 : 김누리(총학생회 회장), 김예진(전 대의원회 의장) 이상 2명	
5. 안 건 : 가.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1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·의결 나.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(안) 심의 다. 학칙 개정(안) 심의	

6. 회의내용 :

-위원장은 『사립학교법』 제29조제4항제1호 '대학교육기관 :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·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·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.' 및 제31조제3항제1호 '대학교육기관 :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·의결을 거쳐야 한다.'에 따라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음을 설명하고 참석하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.

-위원장은 안건으로 위원들에게 2022회계연도 등록금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(안)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다.

-위원장은 등록금회계 수입의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 증가하였고, 지출로 본관 및 편의시설, 복지공간 등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비가 증가되었고, 해외연수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국제교류지원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외출장비도 증가되었음을 설명하다.

-또한 위원장은 국유림 점유에 대한 소송비 등 일반용역비가 증가되었고, 신규학과 모집에 대한 비용 증가와 교육용 노후 PC 및 모니터 구입비, 학술정보센터 자율열람실과 학생서비스공간인 글라스룸의 의자 구입비가 증가되었고, 본관 및 강의A동의 냉·난방기 교체 공사비 증가, 예상치 못한 예산외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한 예비비를 증액하였다고 설명하다.

-자료를 검토한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등록금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확인하다.

-서광적위원이 동의, 강명수위원이 재청하고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
-2022회계연도 등록금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사의결에 이어 위원장은 2022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(안)을 검토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다시 요청하다.

-위원장은 본관 및 강의A동 환경개선공사비는 감소였으며, 국고지원금 국가장학금 I 유형이 추가로 지원받아 증액하였고,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신규로 지원받았으며, 예비비를 증액하고, 연수원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 10,000,000,000원을 임의건축기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.

-위원장은 기획처장이 참석하였음을 말하고, 연수원 건립에 관하여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부탁하다. 

-기획처장은 현재 남산 캠퍼스가 공간이 협소하고 현장 및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 트랜드 변화에 맞추어 교육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였고, 정부 철도망 구축계획사업의 일환인 중앙선 전철 연장선이 계획 되어있는 홍천에 숭의여자대학교 연수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하다.

-또한 기획처장은 연수원 규모는 약7,300평으로 본관동에 대강당, 회의실, 체육실, 컴퓨터실, 휴게실, 관리사무실 등을 배치하고, 식당동, 남자기숙사, 여자기숙사, 실외체육시설, 주차장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건립 예정이고, 우리 재학생들의 실습 및 MT 등 각종 연수 장소와 교직원 연수, 국제교류 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하다.

-기획처장은 연수원 건립에 대해 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,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와 대학평의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설명하다.

-권아림위원은 연수원 완공 시기에 대해 묻자, 기획처장은 2년 내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 대학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임을 설명하다.

-이어서 위원들은 참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, 모든 위원은 2022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(안)이 계정에 맞게 적절히 편성되었음을 확인하다.

- 권아림위원이 동의하고, 서광적위원의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 - 위원장은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1차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해 위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-
- 위원장은 두번째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(안)을 부의하다.
 - 위원장은 『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』이 2022. 2. 7.부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전까지 통지, 회의 자료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기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(안)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.
 - 또한 위원장은 현재 우리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는 『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』 개정 이후부터 회의 소집 통지일과 회의 자료 송부일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다.
 - 서광적위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전 소집 통지와 회의 자료 송부를 이미 법규대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규정 개정에 동의하자, 권아림위원의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여,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(안)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- ~~-위원장은~~ 다음 안건으로 학칙 개정(안)을 부의하다. *Many* *✓✓✓✓*
 - 위원장은 『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』이 2022. 2. 7.부로 일부 개정되어 '위원회의 구성단위별 위원 수, 위원·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.' 의거 학칙을 학칙 개정(안)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.
 - 강명수위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수, 선출 방법, 임기에 대한 내용이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잘 명시되어 있으며, 그 규정대로 학칙 개정(안)에도 명시하였기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자, 서광적위원의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 -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학칙 개정 개정(안)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-
- 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.

2022. 7. 14.

위 회의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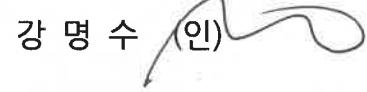
위원장 손화희



위원장 서광적



강명수



권아림



이동철

